

보 도 설 명 자 료

('22. 3. 2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의뢰방식의 변화로 발전공기기업의 REC 구매부담이 늘어나거나, 발전공기기업의 재무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
(3.25일자 매일경제 「정권말 탈탄소 강제할당...발전공기기업 '악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발전공기기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한 신재생 설비에 대해서는 전력거래소에서 구입한 가격을 그대로 보전 받게 되므로 발전공기기업의 재무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- ◇ 또한, 발전공기기업의 연간 신재생 의무공급량 총량은 동일하며 발전공기기업의 REC 구매 의무가 증가하는 것은 아님
- ◇ 3.24일자 매일경제 <“정권말 탈탄소 강제할당...발전공기기업 '악'>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산업부는 “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관리·운영지침” 개정을 통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 의뢰방식을 할당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시행함
 - 동 개정안 시행으로 발전공기기업의 REC 구매 부담이 증가하고,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됨
 - 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발전공기기업들이 '울며 겨자 먹기'로 REC를 필요 이상 구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이번 개정으로 인해 발전공기업의 재무부담이 더 커진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
 - 발전공기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한 신재생 설비에 대해 구입한 가격을 전력거래소에서 그대로 보전받게 되므로 발전공기업의 재무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
 - * 전력거래소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(제18장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 이행비용 보전기준 18.5.1조 제2항)
 - 오히려, 경쟁입찰을 통해 신재생 발전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비용을 정산받게 되어, 개별 발전공기업에 할당된 신재생의무 비율과 관련한 재무적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
- 또한, 발전공기업의 연간 신재생 의무공급량 총량은 동일하며 발전공기업의 REC 구매 의무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님
 - 이번 개정은 동일한 총 의무공급량 이내에서 자체 수의계약, 현물시장 계약, 입찰시장 계약 등 의무이행 방식간의 구성에만 영향이 있음
- 개정안의 취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경쟁입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RPS 위원회에서 보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전공기업 등의 입찰물량을 조율하여 산정하기 위함
 - 발전공기업의 의뢰 물량을 단순 입찰할 경우, 매년 입찰 물량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입찰시장 운영이 불가능함
 - 또한, 발전공기업 외 공공·민간 공급의무사도 입찰물량을 의뢰하고 있어, 단순 집계하여 반영할 경우 적정 입찰물량보다 과다해질 가능성도 있어 위원회를 통한 물량 조율이 필요함

□ 한편, 경쟁입찰 제도는 발전공기업의 자체 수의계약과 과도한 현물시장 비중을 줄이고, 투명한 입찰시장을 통해 경쟁을 유도할 위해 도입한 것임

○ 발전공기업의 자체 수의계약은 경쟁 없이 체결되어 계약 가격의 비효율성*의 우려가 있었음

* (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·제8조) 공기업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.

○ 그동안 경쟁입찰 제도는 신재생 발전사업자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신재생 발전원가의 절감을 유인해왔음

< 경쟁입찰 연평균 낙찰가격 추이 >

구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
낙찰평균가* (원/kwh)	183,097	177,012	163,273	147,561	139,748

* 중규모 태양광(100kw~3M) 기준

※ 문의 : 재생에너지정책과 이재식 과장(044-203-5360) / 송상현 사무관(5364)

- **(제도 개요)** 발전사업자가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될 경우 공급의무자와 고정된 가격으로 20년간 REC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제도('17~)
- **(참여 대상)**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태양광 설비 및 태양광 연계 ESS
- **(입찰 절차)** 사업자는 입찰공고시(매년 4·10월) 입찰가격을 기입하여 신청하고, 공단은 구간별로 경쟁률이 동일하도록 물량을 배분
 - * 입찰구간 : ❶100kW미만, ❷100~500kW미만, ❸500kW~3MW미만, ❹3MW이상
- **(평가 지표)** 사업자 대상으로 입찰가격,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등 계량평가와 개발진행도, 우대설비 등 사업내역서 평가를 진행
 - **(선정)** 평가를 통해 합산 총점이 높은(입찰가격이 낮은순) 사업자부터 입찰물량 내에서 선정하고, 선정후 2개월내에 계약을 체결

< 경쟁입찰 평가 지표 >

지표	계량평가(85)		사업내역서 평가(15)			
	입찰가격	탄소검증모듈	개발진행도	자기자본비율	보험가입	우대설비여부*
배점	75	10	4	4	4	3

* 농축산어민, 협동조합, 주민참여형 설비인 경우 3점(그외는 2점)

- **(실시 현황)** '21.12월말 누적 8,610MW 규모로 입찰 시행
 - 입찰물량은 지속 확대중이며, 낙찰가격은 지속 하락 추세

<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현황 >

구분	'17년		'18년		'19년		'20년		'21년	
	上	下	上	下	上	下	上	下	上	下
낙찰가(원/kWh)	181.6	184.6	180	173.9	167.3	159.3	151.4	143.7	136.1	143.1
입찰물량(MW)	250	250	250	350	350	500	1,200	1,410	2,050	2,200
경쟁률	2.0:1	2.9:1	4.3:1	5.4:1	5.7:1	7.3:1	4.9:1	3.3:1	2.5:1	1.6:1

2. (시장혁신) 시장 효율성 제고 및 다양화 촉진

- ◆ RPS 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신에너지 분리 등 고도화 추진
- ◆ 非전력·분산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저변 확대 병행

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(RPS) 시장개편

1 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 시장 전환

- 현물시장 비중을 축소하고,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 시장을 개편하여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창출 여건 조성
 - 경쟁여건이 형성된 태양광부터 경쟁입찰 계약시장을 확대하고, 現 입찰제도도 시장 참여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 추진
- ①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/신규 사업자 분리입찰 추진 검토
 - ② 현재 중·소규모(3MW 미만) 중심에서 대규모(20MW 이상) 신규시장 신설('21년)

< 태양광 REC 거래시장 개편방향 >

공급의무사 자체건설 (33.1%)		공급의무사 자체건설	
계약시장	에공단 선정입찰 (7.2%)	계약시장	경쟁입찰
	의무사 자체입찰 (4.3%)		수의계약(집적화단지)
	수의계약 (27.1%)		한국형 FIT
	한국형 FIT (1.1%)		
현물시장 (27.2%)		현물시장	

* '19년 RPS 의무이행 실적 기준

- 향후 풍력 등 他 에너지원도 경쟁입찰 적용 및 에너지원별 분리 시장 구축 검토